

「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김성기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9. 25.
- 회부일자 : 2025. 10. 29.
- 상정일자 : 2025. 11. 3.

2. 제안이유

- 평창군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주민 주도 관광사업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제7호)
-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에 대한 규정 추가(안 제4조제3호)
- 띄어쓰기 등 자구 정리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나. 입법의 취지

-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고,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2조제7호에서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.
- 안 제4조제3호를 신설하여 주민 주도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2조제2호, 제3호 및 제10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의 조항을 인용 함에 있어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자구를 정리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문화체육관광부는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('23~'27년)에서 지역 관광시대 구현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공공성을 조화시킨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군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-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 관광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**관광진흥법**

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① ~ ③ (생략)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
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
3.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
4.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5.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
6.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